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66 호

2001 년 1 월 10 일 수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0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1호(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조례등중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2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3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4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 레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5호(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6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7호(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8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고지기금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21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9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2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0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 26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1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2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2호(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8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2호(인천광역시남동구2000년도예산고시) ---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3호(인천광역시남동구2001년도예산고시) --- 3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7호(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기준주민수공포공고) 39

중앙·시행정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246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184호)
선외30개노선)결정및지형도면고시) 40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6명”을 “8명”으로 변경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하고, “총무국” 다음에 “보건소”를 삽입하며, 나목의 “출장소”를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회산업국”을 “사회경제국”으로 하고 “보건소”를 “출장소”로 하며 나목의 “출장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1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 제12조2항중 “후생복지담당” 을 “총무담당” 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서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4조 3항의 2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5조중 “사회산업국장” 을 “사회경제국장” 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제4조3항중 “징수과장” 및 “경영재정과장” 을 “허가재무과장” 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제6조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제21조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13조2항의2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8조2항중 “노인아동복지담당”을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6조4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칙중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에게” 로 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조(장학금의 자격)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본칙중 “3년 이상” 을 “2년 이상” 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상·하반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를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로 한다

제4조(선발) 제1항중 “학교장의 의견(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로 하고, 제2호 “장기근속 통장” 을 제3호로 하고, 제3호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납부증명원으로 확인)” 을 “생활이 어려운 통장(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각각 30,000원 미만인 자)”으로 하여 제2호로 하며, 제4호는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학생은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제1항 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중 별지1호서식 내용중 “경영재정과 공공시설관리담당”을
“허가재무과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7조의2항중 별지2호서식 내용중 “경영재정과 공공시설관리담당”을
“허가재무과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 서식]

예식장 사용허가 신청서				
○ 접수 :				
신랑	성명		혼주및혼주와의 관계	의 () 남
	주소	()		
신부	성명		혼주및혼주와의 관계	의 () 녀
	주소	()		
예약일시	년 월 일 시			
비품사용 여부	1. 드레스(본인준비. 구청제공) 2. 페백복(본인준비. 구청제공) 3. 피로연장(본인준비. 구청제공) 4. 기 타			
신청 사용료	금	원정(₩)		
위와 같이 남동구청 예식실 사용을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및 관계 (인) 주민등록확인필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예식실 사용 확인증		
○ 접수 :		
신랑	성명	
	주소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사용사용료	금	원정(₩)
위와 같이 남동구청 예식실 사용을 허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확인) 허가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인)		

[별지 제2호 서식]

예식장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 접수 :				
신랑	성명		혼주및혼주와의 관계	의 ()남
	주소	()		
신부	성명		혼주및혼주와의 관계	의 ()녀
	주소	()		
예약일시	년 월 일 시			
취소구분	① 예식관련 사항 전부 취소 ② 일부취소(구내식당 이용)			
신청 사용료	금	원정(W ₩)		
위와 같이 남동구청 예식실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및 관계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귀하				

예식실 사용허가 취소 확인증				
○ 접수 :				
신랑	성명			
	주소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취소구분	① 예식관련사항 전부 취소 ② 일부취소 (구내식당이용)			
사용사용료	금	원정(W ₩)		
위와 같이 남동구청 예식실 사용을 허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확인) 허가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5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단가 1천만원이상인”을 단가 20백만원이상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경영재정과”를 “허가재무과”로 한다

제30조중 “경영재정과장을”을 “허가재무과장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6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중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수수료의 고액등 증지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로 한다.

제5조1항중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기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판매인 계약등)①증지는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판매 할 수 있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증지를 판매하고자 신청한 자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1항중 “구청장이 지정하는”을 삭제한다.

제9조2항중 “선량한 관리자로서”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중 “직장금고는 제8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를 “증지의 수요와 판매구역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구청장은 판매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2조의 “판매 또는 판매인신고”를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의무”로 한다.

제17조1항중 “제5조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을 “제5조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계기사용 증지대금의 납입은”로 한다.

제17조 2항중 “별지제10호서식” “별지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 내지 제31조”를 “제18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제21조1항중 “증지를 반환하여”를 “판매인은 증지를 반환하여”로 하고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를 삭제하고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을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지된 자는”로 한다.

제21조3항중 “제17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1] 과 같이하고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2] 와 같이하고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을 [별지3] 과 같이 하고 별지제9 호 서식을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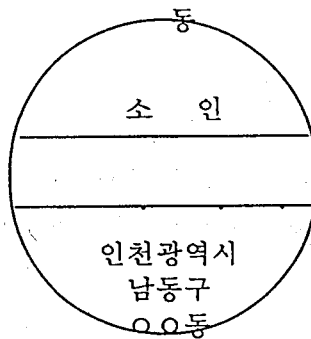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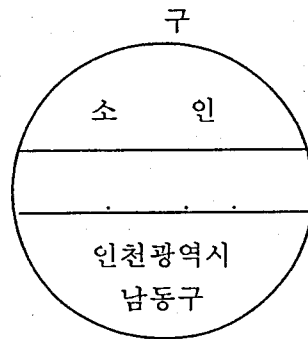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1]

【별표1】



【별표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판매소

〔별지3〕

【별지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구 분			금 액 별 사용내역				착 오 발급분	수수료	결 제	
월일	계									
/	일 계	건수								
		금액								
/	누 계	건수								
		금액								

【별지제8호서식】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계약일자	년 월 일	성 명	
주 소			
판매장소			
사유발생일	년 월 일		
신고사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판매인,관계인)주소 : 성 명(판매인과의 관계:) (서명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및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한다.

제2조의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9호”로 “제3호”를 “제10호”로 하며 “제3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시비보조금
3. 구 이외의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제3조의 “제3호” 내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43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5.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초생활보장사업

제6조 “제3항” 내용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2호” 및 “제5호” 와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제4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5장”을 “제6장” 으로 하고 “제20조 내지 제24조”를 “제27조 내지 제31조”로 하며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20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20 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21조(지원대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2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22조(지원신청)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5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며 “노인복지 담당으로 한다”를 “노인복지 담당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보호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0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1호, 2호를 삭제한다.

제3조중 3호내지 5호를 1호내지 3호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
영규칙은 폐지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1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내지 제10조를 제8조내지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1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지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관련 별지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제7조관련 별지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2호

인천광역시남동구2000년도예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21일 제87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00년도 회계별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132,040,508	125,306,539	6,733,969	5.4	
일 반 회 계	97,762,164	95,618,623	2,143,541	2.2	
특 별 회 계	34,278,344	29,687,916	4,590,428	15.5	
의료보호기금	7,585,293	5,201,608	2,383,685	45.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499,376	1,499,376	0	0.0	
주 차 장	5,781,317	5,411,317	370,000	6.8	
장수지구토지 주택개발사업	5,368,447	3,867,004	1,501,443	38.8	
석촌지구토지 주택개발사업	12,554,408	12,554,408	0	0.0	
막수지구토지 주택개발사업	1,489,503	1,154,203	335,300	29.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97,762,164	100.0	95,618,623	100.0	2,143,541	2.2
세입	지방세수입	21,094,838	21.6	20,708,052	21.7	386,786	1.9
	세외수입	24,248,782	24.8	24,393,460	25.5	△144,678	△0.6
	경상적세외수입	12,268,272	12.5	11,746,230	12.3	522,042	4.4
	임시적세외수입	11,980,510	12.3	12,647,230	13.2	△666,720	△5.3
	지방교부세	1,216,000	1.2	1,216,000	1.3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29,113,151	29.8	29,113,151	30.4	0	0.0
	보조금	22,089,393	22.6	20,187,960	21.1	1,901,433	9.4
	국고보조금	16,079,149	16.4	14,449,260	15.1	1,629,889	11.3
	시·도비보조금	6,010,244	6.1	5,738,700	6.0	271,544	4.7
세출	경상예산	40,155,173	41.1	42,157,899	44.1	△2,002,726	△4.8
	인건비	20,506,772	21.0	21,547,975	22.5	△1,041,203	△4.8
	경상적경비	19,648,401	20.1	20,609,924	21.6	△961,523	△4.7
	사업예산	51,530,788	52.7	49,643,862	51.9	1,886,926	3.8
	보조사업	30,762,093	31.5	28,458,453	29.8	2,303,640	8.1
	자체사업	20,768,695	21.2	21,185,409	22.2	△416,714	△2.0
	채무상환	494,534	0.5	494,534	0.5	0	0.0
	지방채상환	494,534	0.5	494,534	0.5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5,581,669	5.7	3,322,328	3.5	2,259,341	68.0
	예비비	3,937,810	4.0	1,307,677	1.4	2,630,133	201.1
	기타	1,643,859	1.7	2,014,651	2.1	△370,792	△18.4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97,762,164	100.0	95,618,623	100.0	2,143,541	2.2
성 질 별	인 건 비	20,513,267	21.0	21,554,470	22.6	△1,041,203	△4.8
	물 건 비	13,249,558	13.6	13,786,526	14.4	△536,968	△3.9
	이 전 경 비	29,283,651	29.9	30,108,828	31.5	△825,177	△2.7
	자 본 지 출	29,065,404	29.7	26,769,456	28.0	2,295,948	8.6
	보 존 재 원	404,800	0.4	404,800	0.4	0	0.0
	내 부 거 래	486,866	0.5	486,866	0.5	0	0.0
	예비비 및 기타	4,758,618	4.9	2,507,677	2.6	2,250,941	89.8
기 능 별	일 반 행 정	29,923,249	30.6	31,747,826	33.2	△1,824,577	△5.7
	사 회 개 발	54,003,526	55.2	52,048,161	54.4	1,955,365	3.8
	경 제 개 발	7,777,498	8.0	7,896,641	8.2	△119,143	△1.5
	민 방 위 비	504,739	0.5	623,784	0.7	△119,045	△19.1
	지원및기타경비	5,553,152	5.7	3,302,211	3.5	2,250,941	68.2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34,278,344	100.0	29,687,916	100.0	4,590,428	15.5
세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외수입	26,727,715	78.0	24,526,272	82.6	2,201,443	9.0
	경상적세외수입	16,389,177	47.8	13,549,534	45.6	2,839,643	21.0
	임시적세외수입	10,338,538	30.2	10,976,738	37.0	△638,200	△5.8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조금	7,550,629	22.0	5,161,644	17.4	2,388,985	46.3
	국고보조금	6,027,383	17.6	4,129,315	13.9	1,898,068	46.0
	시·도비보조금	1,523,246	4.4	1,032,329	3.5	490,917	47.6
세	경상예산	323,727	0.9	606,261	2.0	△282,534	△46.6
	인건비	99,057	0.3	104,353	0.4	△5,296	△5.1
	경상적경비	224,670	0.7	501,908	1.7	△277,238	△55.2
	사업예산	22,875,074	66.7	17,859,662	60.2	5,015,412	28.1
	보조사업	7,534,229	22.0	5,145,244	17.3	2,388,985	46.4
	자체(신규)사업	15,340,845	44.8	12,714,418	42.8	2,626,427	20.7
	채무상환	0	0.0	0	0.0	0	0.0
	지방채상환	0	0.0	0	0.0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11,079,543	32.3	11,221,993	37.8	△142,450	△1.3
출	예비비	11,044,879	32.2	11,182,029	37.7	△137,150	△1.2
	기타	34,664	0.1	39,964	0.1	△5,300	△13.3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4,278,344	100.0	29,687,916	100.0	4,590,428	15.5
성 질 별	인 건 비	99,057	0.3	104,353	0.4	△5,296	△5.1
	물 건 비	135,452	0.4	180,877	0.6	△45,425	△25.1
	이 전 경 비	7,623,447	22.2	5,466,275	18.4	2,157,172	39.5
	자 본 지 출	13,842,873	40.4	11,216,446	37.8	2,626,427	23.4
	용 자 및 출 자	1,497,972	4.4	1,497,972	5.0	0	0.0
	내 부 거 래	0	0.0	0	0.0	0	0.0
	예비비 및 기타	11,079,543	32.3	11,221,993	37.8	△142,450	△1.3
기 능 별	일 반 행 정	0	0.0	0	0.0	0	0.0
	사 회 개 발	22,451,231	65.5	17,501,424	59.0	4,949,807	28.3
	경 제 개 발	747,570	2.2	964,499	3.2	△216,929	△22.5
	민 방 위 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11,079,543	32.3	11,221,993	37.8	△142,450	△1.3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1-3호

2001년도예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15일 제8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확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1.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01년도 회계별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도 예 산 액	2000년도 최종예산액	증 감		비 고
				%	
합 계	126,950,851	132,040,508	△5,089,657	△3.9	
일 반 회 계	96,104,346	97,762,164	△1,657,818	△1.7	
특 별 회 계	30,846,505	34,278,344	△3,431,839	△10.0	
의료보호기금	7,430,970	7,585,293	△154,323	△2.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544,490	1,499,376	45,114	3.0	
주 차 장	6,700,000	5,781,317	918,683	15.9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5,321,000	5,368,447	△47,447	△0.9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8,439,000	12,554,408	△4,115,408	△32.8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1,411,045	1,489,503	△78,458	△5.3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도 예산액	구성비	2000년도 최종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96,104,346	100.0	97,762,164	100.0	△1,657,818	1.7
세입	지방세수입	18,621,557	19.4	21,094,838	21.6	△2,473,281	11.7
	세외수입	18,150,931	18.9	24,248,782	24.8	△6,097,851	△0.6
	경상적세외수입	11,186,240	11.6	12,268,272	12.5	△1,082,032	25.1
	임시적세외수입	6,964,691	7.2	11,980,510	12.3	△5,015,819	△41.9
	자방교부세		0.0	1,216,000	1.2	△1,216,000	△1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35,815,240	37.3	29,113,151	29.8	6,702,089	23.0
	보조금	23,516,618	24.5	22,089,393	22.6	1,427,225	6.5
	국고보조금	17,314,166	18.0	16,079,149	16.4	1,235,017	7.7
	시·도비보조금	6,202,452	6.5	6,010,244	6.1	192,208	3.2
	경상예산	40,405,754	42.0	40,155,173	41.1	250,581	0.6
세출	인건비	20,377,062	21.2	20,506,772	21.0	△129,710	△0.6
	경상적경비	20,028,692	20.8	19,648,401	20.1	380,291	1.9
	사업예산	51,522,563	53.6	51,530,788	52.7	△8,225	0.01
	보조사업	30,532,459	31.8	30,762,093	31.5	△229,634	△0.7
	자체사업	20,990,104	21.8	20,768,695	21.2	221,409	1.1
	채무상환	477,294	0.5	494,534	0.5	△17,240	△3.5
	지방채상환	477,294	0.5	494,534	0.5	△17,240	△3.5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3,698,735	3.8	5,581,669	5.7	△1,882,934	△33.7
	예비비	988,643	1.0	3,937,810	4.0	△2,949,167	△74.9
	기타	2,710,092	2.8	1,643,859	1.7	1,066,233	64.9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도 예산액	구성비	2000년도 최종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96,104,346	100.0	97,762,164	100.0	△1,657,818	2.2
성 질 별	인 건 비	20,377,062	21.2	20,513,267	21.0	△136,205	△0.7
	물 건 비	14,299,926	14.9	13,249,558	13.6	1,050,368	7.9
	이 전 경 비	36,195,116	37.6	29,283,651	29.9	6,911,465	23.6
	자 본 지 출	21,404,020	22.3	29,065,404	29.7	△7,661,384	△26.4
	보 존 재 원	404,800	0.4	404,800	0.4	0	0.0
	내 부 거 래	1,234,779	1.3	486,866	0.5	747,913	153.6
	예비비 및 기타	2,188,643	2.3	4,758,618	4.9	△2,569,975	△54.0
기 능 별	일 반 행 정	31,037,179	32.3	29,923,249	30.6	1,113,930	3.7
	사 회 개 발	50,620,964	52.7	54,003,526	55.2	△3,382,562	△6.3
	경 제 개 발	10,707,674	11.1	7,777,498	8.0	2,930,176	37.7
	민 방 위 비	522,592	0.5	504,739	0.5	17,853	3.5
	지원및기타경비	3,215,937	3.4	5,553,152	5.7	△2,337,215	△42.1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도 예산액	구성비	2000년도 최종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0,846,505	100.0	34,278,344	100.0	△3,431,839	△10.0
세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외수입	23,437,035		26,727,715	78.0	△3,290,680	△12.3
	경상적세외수입	14,375,464	47.8	16,389,177	47.8	△2,013,713	△12.3
	임시적세외수입	9,061,571	30.2	10,338,538	30.2	△1,276,967	△12.4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조금	7,409,470	22.0	7,550,629	22.0	△141,159	△1.9
	국고보조금	5,927,576	17.6	6,027,383	17.6	△99,807	△1.7
	시·도비보조금	1,481,894	4.4	1,523,246	4.4	△41,352	△2.7
세출	경상예산	318,247	1.0	323,727	0.9	△5,480	△1.7
	인건비	47,393	0.1	99,057	0.3	△51,664	△52.2
	경상적경비	270,854	0.9	224,670	0.7	46,184	20.6
	사업예산	19,411,129	62.9	22,875,074	66.7	△3,463,945	△15.1
	보조사업	7,409,470	24.0	7,534,229	22.0	△124,759	△1.7
	자체(신규)사업	12,001,659	38.9	15,340,845	44.8	△3,339,186	△21.8
	채무상환	0	0.0	0	0.0	0	0.0
	지방채상환	0	0.0	0	0.0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11,117,129	36.1	11,079,543	32.3	37,586	0.3
	예비비	11,095,629	36.0	11,044,879	32.2	50,750	0.5
	기타	21,500	0.1	34,664	0.1	△13,164	△38.0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1년도 예산액	구성비	2000년도 최종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0,846,505	100.0	34,278,344	100.0	△3,431,839	△10.0
성 질 별	인 건 비	47,393	0.4	99,057	0.3	△51,664	△52.2
	물 건 비	214,086	0.6	135,452	0.4	78,634	58.1
	이 전 경 비	7,479,238	18.4	7,623,447	22.2	△144,209	△1.9
	자 본 지 출	10,445,573	37.8	13,842,873	40.4	△3,397,300	△24.5
	응 자 및 출 자	1,543,086	5.0	1,497,972	4.4	45,114	3.0
	내 부 거 래	0	0.0	0	0.0	0	0.0
	예비비 및 기타	11,117,129	37.8	11,079,543	32.3	37,586	0.3
기 능 별	일 반 행 정	0	0.0	0	0.0	0	0.0
	사 회 개 발	19,338,557	59.0	22,451,231	65.5	△3,112,674	△13.9
	경 제 개 발	390,819	3.2	747,570	2.2	△356,751	△47.7
	민 방 위 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11,117,129	37.8	11,079,543	32.3	37,586	0.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1-7호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기준주민수공포공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구현을 위한 직접참여제도의 부분적도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관련 20세이상 주민총수와 연서 해야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다 음

(단위 : 명)

구 분	20세이상 주민총수	연 서 주 민 수	비 고
남 동 구	281,553	6,900	

2001.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중양·시행정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24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184호선외30개노선)결정및지형도면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류 184호선외 30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75)와 해당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여 드립니다.

2000.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결정 및 지형도고시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능	기 점	중 점	사용형태	비 고
중로	3	184	12	400	집산	광3-7호 (운연동)	소1-1호	일반	

나. 지형도고시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중 점	지형도고시(m)		비 고
							기고시	금회고시	
대로	2	61	30	12,420	평동6-3 시계	서측구역계 점단		5,520	
대로	2	2	30	915	사동 광3-2호	4호광장 동인천역		915	노선분리
대로	2	49	30	650	화평동 중1-6호	송현동 광3-2호		650	노선분리
소로	1	1	10	102	화평동 528-4	화평동 중1-6호		102	폭원축소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지형도고시(m)		비 고
							기고시	금회고시	
대로	2	47	30	80	광3-2호	항동6가 대2-6호		80	
대로	3	33	25	415	대2-35호	십정동 대1-14호		415	노선축소
대로	3	80	25	695	가좌동109 (고속측도)	가좌동 중1-69호		695	
중로	1	4	20	885	12호광장 승의R	승의동 대1-1호		885	
중로	1	12	20	1,485	대2-17호	중1-138호 월미도		1,485	
중로	1	138	20	815	중1-48호	중1-12호 월미도		415	노선분리
중로	1	26	20	1,330	대2-35호	가좌동 중1-69호	750	580	
중로	1	40	20~35	8,003	계산동201 시계	효성동 중1-27호	4,503	3,500	
중로	1	82	20	240	대3-28호	석남동 중1-76호		240	
중로	1	132	20	300	중1-48호	중1-138호 월미도		300	
중로	1	133	20	245	중1-132호	중1-12호 월미도		245	
중로	1	134	20	148	광3-2호	신흥동 대2-9호		148	
중로	1	174	21	530	중2-131호	가좌동169 고속측도		530	
중로	2	55	15	610	대3-18호	화평동 중2-6호	450	160	노선연장
중로	2	119	15	392	대2-30호	십정동 대1-14호	202	190	노선연장
중로	2	131	15	490	대2-35호	가좌동 대2-29호		490	
중로	2	132	15	160	중1-48호	중1-138호 월미도		160	
중로	2	178	15	87	광3-2호	선린동 대3-7호		87	
중로	2	179	15	60	대3-7호	송월동 중2-180호		60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지형도고시(m)		비 고
							기고시	금회고시	
중로	2	180	15	420	북성동 5-1	송월동 7-1		420	
중로	2	181	15	135	대2-6호	관동 21-1		135	
중로	2	193	15	95	광3-1호	송의동 대2-41호		95	
중로	2	194	15	140	광3-1호	송의동 대1-1호		140	
중로	2	195	15	180	12호광장 송의로타리	송의동 중2-4호		180	
중로	3	131	12	230	중1-48호	중1-132호 월미도		230	
중로	3	180	14~17	586	대2-6호	해안동4가 2-33		586	
중로	3	181	13	63	관동 22-3 소1-15호	관동 21-6 소2-1호		63	

나. 지형도 고시도면 : 붙임(생략)